

KEC 검사판정기준	제2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제280절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	참고자료
---------------	--	------

제280절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

KEC 351.1

280-1 발전소 등의 울타리 · 담 등의 시설

-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·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 · 변전소 ·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. 다만,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울타리 · 담 등을 시설할 것
 2.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
 3.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
- ② 제1항의 울타리 · 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
1. 울타리 ·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· 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
 2. 울타리 · 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·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·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

사용전압의 구분	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
35 kV 이하	5 m
35 kV 초과 160 kV 이하	6 m
160 kV 초과	6 m 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.12 m를 더한 값

-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, 모선 등을 다음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 · 변전소 ·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. 다만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 · 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울타리 · 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의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

KEC 검사판정기준	제2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제280절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	참고자료
---------------	--	------

2.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
-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(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)과 금속제의 울타리·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·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,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KEC 140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. 또한 울타리·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·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,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,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.
- ⑤ 공장 등의 구내(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, 담 등을 시설하고,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)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·변전소·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“위험” 경고 표지를 하고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1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-2009 및 KECC 7701-2008을 참고할 수 있다.

280-2 특고압 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

KEC 351.2

- ① 발전소·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(相別) 표시를 할 것
- ② 발전소·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(模擬母線)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것 다만,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